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사업장이 보유한 건물,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사고로부터 팬택씨앤아이계열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에서 정하는 외에는 이 규정을 따르며, 대상 사업·사업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사 및 각 사업장의 건물
2.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작업 현장, 시설 및 설비
3. 기타 사업장에서 발주한 공사 등 도급 사업

제3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관리"란 사업장이 보유하거나 발주·도급한 시설, 설비, 작업 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및 활동을 말한다.
2. "관계법령" 이라 함은「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말한다.
3. "근로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사업장 직원과 통신선로 작업을 위해 근무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4. "산업재해" 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5. "중대재해" 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6. "유해·위험요인" 이란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7."위험성평가"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8. "도급사업" 이란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발주 업체 등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생산공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분야의 공사로서 수급 업체(하수급업체포함)를 통하여 공사·정비·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산

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관리우선) ①대표이사 및 부서의 장(이하 "대표"이라 한다)은 근로자와 일반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대표는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대표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 개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방침은 문서화하고 대표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사업장 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④ 대표는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사업장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예방책임과 의무) ① 이 규정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사고예방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표
    가.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 및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다.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시책 준수
2. 팬택씨앤아이계열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
    가. 이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 준수
    나. 안전 작업 지침, 규정, 매뉴얼의 준수
    다.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 철저

제6조(도급사업안전·보건 관리) ① 대표는 도급 사업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개선하고,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현장 안전보건 점검, 작업 현장의 안전조치,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관계법령, 절차서 등의 준수여부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4.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및 개선조치 사항의 점검

제7조(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변경)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 2 장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직무

제8조(안전보건관리조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을 둔다.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대표는 사업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권한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에게 위임하며, 전체 사업의 관리책임자는 사업총괄본부장으로 하고 각 사업소 별 관리책임자는 사업소의 장들이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관리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및 관계법령,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건 유지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 감소를 위한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및 근로 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안전보건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7. 수급업체를 포함한 사고, 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관리 주관부서) ①대표는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주관 부서로 안전보건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보건업무를 추진·주관
2. 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주관
3. 위험성평가 수행사항 관리 등 안전보건활동의 원활한 수행
4. 각 지역 관리감독자에 지도, 조언

5. 각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대한 각종 사항

제11조(관리감독자) ①대표는 소속 근로자 및 협력업체를 지휘· 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각 사업장에 관할 지역 별 담당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소관 업무의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소관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소관 분야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6. 그 밖에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③ 관리감독자는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자) ①대표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통신공사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감독
3. 위험성평가 주관 및 지도·조언
4. 안전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책의 강구, 기록 유지 및 보고와 사고 사례의 취합
5. 안전점검,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
7.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8. 작업에 필요한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9.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11.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구성) ①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 구성은 사측은 대표이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사업부서장 9명 이내로 구성한다. 노측 위원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직책이 없는 근로자를 사측 위원 동수에 맞게 구성한다.
③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경영담당부서 최고 관리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매 분기 별로 개최하고, 위원장이나 위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2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추가로 노사가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위원회 운영 전반의 사무 행정을 처리한다.

제15조(안전보건협의체구성 및 운영) ① 관리책임자는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협력업체의 관리책임자를 포함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협의체의 주요 협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안전조치에 관한 개선 사항
2. 위험성 감소 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사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6.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는 월 1회 정기 개최하며, 다음의 경우 추가로 긴급 임시협의체를 개최할 수 있다.
1. 사업장 및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하게 작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 3 장 안전·보건교육

제16조(안전·보건교육) ①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주관부서는 관계법령 및 절차에 따라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 실시 및 기록 하여야 한다.
③ 팬택씨앤아이계열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는 안전관리 주관부서 및 관리감독자가
주관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안전. 보건교육 대상, 시간 및 내용은 별첨 1와 같다.

제17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5. 안전보건담당자
6.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7. 산업안전지도사

②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18조(기록·보존)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록한 교육일지 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 4 장 안전보건관리

제19조(안전보건세부계획) ①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계획을 세운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경영 방침, 목표 및 안전보건경영 활동 계획
2. 안전보건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4.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

제20조(안전점검 및 조치) ① 안전관계자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긴급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매 월 1회 협력사 관리책임자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작업현장 내 위험 예방을 위해 즉각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발굴· 제보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제21조(안전감시자배치) 다음 항목의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안전감시자 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 현장의 안전 확보, 작업자 상태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2.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수행 시
4. 작업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 1.2m이상인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작업
5. 건물 외벽 달비계 작업
6. 기타 작업 도중 감시자가 필요하다고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작업

제22조(기계·기구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조치를 하 지 아니하고는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을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
②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 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계·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초기의 날 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의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의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의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의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제23조 (안전검사) ①관리책임자는 사업장 소유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안전수칙준수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외벽 작업 등 위험 작업은 신호수 및 감시자를 포함하여 최소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한다.
2. 폭염 등 이상 기후 시 현장 근로자 작업 중지 및 휴식 제도 이행으로 사고를 사전예방
3.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직접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작업 중지권' 운영
4. 작업현장 안전보건개선을 위한 근로자의 내부 제안제도 실시
5. 각 사업장에 부착된 작업안전수칙 철저 준수여부 확인
6.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퇴거 조치 이행

제25조 (위험물질의보관 및 출입 제한) 관리책임자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①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관 계자 이 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장 내 위해위험작업을 실시할 경우 작업장 부 근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③ 안전 표지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
2.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또는 부착
3.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한 경우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에 직접 도장 가능
4. 위험물질을 소분하는 경우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MSDS위험물질 표찰을 붙인다.

제26조(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①관리책임자는 산업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사고, 재해발생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작업장 내에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는 관리책임자에게 작업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긴급한 경우 근로자는 안전·보건 조치를 우선 이행하고, 사고의 개요, 작업 중지 내역, 조치 결과 등을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⑤관리감독자는 위험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의 원인과 요청 내용 및 그 조치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⑥ 합리적 근거가 있어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에게는 이에 따른 사항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27조(안전보건표지) ①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 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표지 및 안전수칙을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28조(비상조치계획) ①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위해 비상사태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조직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대피 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제29조(직무스트레스예방 및 감정노동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① 관리책임자는 직원이 감정노동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쾌감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병 등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직무스트레스 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시간 근무, 야간 업무, 교대근무, 민원응대업무 등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근무
2.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급성 또는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업무
③ 관리책임자는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노동 완화 방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관리책임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 (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질환을 보유한 임직원은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31조(작업환경측정의실시 및 조치 절차) ① 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록·보존 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건강진단) ① 매년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직원의 작업 장소 변경, 작업의 전환, 작업시간 단축,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보호구의지급) ① 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장비에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항상 보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전용 보호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보호구를 공동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관리책임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 시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제 5 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35조(산업재해의발생 시 처리절차 및 긴급조치) ① 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전 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계획 등을 기록·보존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 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해를 최초로 목격한 자 또는 그의 신고를 접수한 재해발생 부서는 재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후, 별첨 2 사고보고서 서식에 따라 재해 정보 및 조치내용 등을 안전관리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산업재해의발생원인 조사, 분석 및 대책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의 조사 및 분석, 대책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을 파악하고,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사실을 수집한다.
2. 재해 요인의 파악을 위하여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재해 요인을 찾는다.
3. 재해 요인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원인 및 간접 원인을 결정한다.
4. 대책 마련 시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 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유사 재해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5.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 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재해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내용을 공유하여 동종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안전관리 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산업재해발생의 기록·관리) 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제 6 장 위험성평가

제38조(위험성평가실시) 협력업체 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감소 대책을 수립·실시 하여야 한다. 팬택씨앤아이계열 관리감독자와 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작성의 지원을 한다.
1.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위험성 결정 내역을 본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실시한다.
3. 제1호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4. 제1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에 따른다.
5. 위험성 평가는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 주관부서에서 주관한다.

제39조(위험성평가시기) ① 위험성 평가는 최초 평가 및 수시 평가, 정기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최초평가는 사업개시 후 1년 이내에 실시하며, 전체 작업에 대하여 최초 1회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성 평가를 말한다.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1.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가 발생한 때
2.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0조(위험성평가절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단계(사전준비) 정확한 작업공종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2. 2단계(유해·위험 요인 파악) 작업공정 별 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
3. 3단계(위험성 추정) 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4. 4단계(위험성 결정)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 허용 가능 여부 판단
5. 5단계(위험성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의 경우 감소대책수립, 실행
6. 6단계(기록)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기록하여 문서로 보존

제41조(위험성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위험성을 결정 후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 범위로 들어오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2조(안전보건 문서의 보존)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생산시기로부터 3년 간 보존한다.
1.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기록
2.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기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서류
5.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서류
② 전산상 시스템 입력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부칙<2022. 12. 09, 규정 PC&I-R-079>

이 규정은 2022년 1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

[별첨 1]

안전보건교육 대상, 교육시간 등(제15조 5호 관련)

1.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안전보건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직무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 단기간,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 6시간 보수교육 : 6시간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 34시간 보수교육 : 24시간

2. 교육과정별 교육 내용

교 육 과 정	교 육 내 용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 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 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내용> ○ 채용 시 교육 동일 <개별 내용> ○ 해당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방법, 응급조치, 보호구 등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 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별첨 2] 초기사고보고서

초기사고보고서

[2022 – 00 - 00]

1. 현장정보

현장명				재해발생일	2000. 00. 00
지사장		안전관리자		보고일	2000. 00. 00

2. 재해자정보

성 명				직종	
소 속		최초출역일	2000-00-00	나이/경력	/

3. 재해발생경위/원인/긴급조치

경 위	
원 인	
긴 급 조 치	□ 작업중지 □ 안전조치 후 작업 □ 기타 :

4. 재해자 상태

현장응급조치	
병원조치	
향후진료 및 치료사항	

5. 향후 처리계획

처리방안	□ 산재처리 □ 차량/장비보험 □ 불승인 대응 □ 해외근재 □ 기타 (운전자 졸음운전 시인, 경찰조사 시 초기조서에 기재함)
처리근거	
Issue사항	
본사 지원사항	
안전보건팀의견	

6. 사고상황도/설명

7. 사고처리 F/up (본사작성)

필수항목						해당시			
초기보고 (당일보고)		정식보고(7일이내 SEIS등록)		재발방지협의회개최(10일이내)		대관 사고보고		요양신청	
☐	/ /	☐	/ /	☐	/ /	☐	/ /	☐	/ /
최종결과		☐ 산재 처리 ☐ 차량/장비보험 ☐ 불승인 대응 ☐ 해외 근재 ☐ 기타 ( )							
/ /		Note.						담당: (Sign)	

사 진 대 지

사고현장 위치	GIS 도면
사건현장사진	사건현장사진

사고상황도

사고현장 상황도	
일시 : 20 년 월 일	사고 장소 :
상황도	